

#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3223호 |
|----------|---------|

제출년월일 2023. 4. 7.  
제출자 유매희의원

## 1. 제안이유

- 조례 내 잘못 사용된 명칭, 약칭을 바로 잡고, 불일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약칭 ‘소속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 나. 명칭 ‘해당 지방의회’ 을 ‘김포시의회’ 으로 변경(안 제8조)
- 다. 명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김포시장’ 으로 변경(안 제11조)
- 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4. 12. ~ 2023. 4. 17.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해당없음.
  - 3)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속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지방의회”를 “김포시의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을 “(통합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김포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u>소속공무원</u>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u>소속공무원</u>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u>소속공무원</u>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p> <p>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u>소속공무원</u>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p> <p>2. 자율항목 : 의장이 <u>소속공무원</u>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p> |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br/>----- <u>공무원</u>-----<br/>-----<br/>-----.</p> <p>② -----<br/>----- <u>공무원</u>-----<br/>-----<br/>-----.</p> <p>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br/>-- <u>공무원</u>-----<br/>-----<br/>-----.</p> <p>② -----<br/>-----<br/>-----.</p> <p>1. -----<br/>----- <u>공무원</u>-----<br/>-----<br/>-----</p> <p>2. ----- <u>공무원</u>-----<br/>-----<br/>-----</p> |

여가활용·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생략)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  
-----

③ -----  
-----  
-----  
----- 공무원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  
-----.

1. 공무원-----  
-----
2. 공무원-----  
-----
3. 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성  
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  
야 한다. <후단 삭제>

④ -----  
----- 공무원 -----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2. (생략)

⑤·⑥ (생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  
----- 김포시의회 -----  
-----  
-----.

1.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 운영) -----  
----- 김포시장 -----  
-----  
----- 제8조 -----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김포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3. 김포시의회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6.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

7.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